현 장 설 명 서

1. 건 명 : 도심공항 동파취약지구 보완공사

2. 현장설명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18. 7. 11 (수) 14:00
   나. 장 소 : 6층 회의실(616호)

3. 현장 설명자
   주 관 - 관리지원팀 차 장 전 현 주
   시방서 및 현장설명 - 시설관리팀 과 장 김 지 환

4. 공사기간 : 계약개시일로부터 80일 이내(2018.8.6 ~ 2018.10.25 이내)

5. 입찰등록 장소 및 일시
   가. 등 록 :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 관리지원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87길 22, 616호)
   나. 일 시 : 2018. 7. 23(월) 12:00까지

6. 평가방법 및 낙찰자 결정
   가. 서류심사 및 제안발표업체 선정 : 입찰서 제출일로부터 1일 이내
   나. 제안발표 및 평가 : 서류심사 상위3개 업체 대상으로 발표 및 평가 실시
   다. 우선협상대상 선정 통보 :
   ① 가,나항 평가 시행 후 종합 평가하여 우선협상 대상 선정
   ② 선정완료 후 5일 이내 개별통보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8.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나. 모든 서류의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야 한다.(사용인감계 제출 가능)
   다. 제안서 평가내용과 관련서류는 공개하지 않고,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7. 유의사항
   가. 본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에서 배부하는 현장설명서, 입찰자유의서, 제안요

청서 등 제반관련서류는 당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복사 또는 복제할 수 없다. 만일 외부유출시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자료유출업체에 모든 법적책임이 있다.

나. 현장설명서, 입찰자유의서, 제안요청서 등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시 문서로 질문하여야 하며, 본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8. 기 타

입찰일시 및 장소는 당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 (사업자등록번호:120-81-02048)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87길 22

전 화 : (관리지원팀) ☎ 551-0836, (시설관리팀) ☎ 551-0832

입 찰 자 유 의 서

건　　명 : 도심공항 동파 취약지구 보완공사 제안입찰

제안서 등록 일시 : 2018년　7월　23일 (월) 12:00 까지

제 출 방 법 : 당사로 직접 제출(우편,E-Mail,Fax 등 접수 불가)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주)

입 찰 자 유 의 서

이 유의서는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 주식회사(이하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이라 한다)가 행하는 도심공항자산관리 동파취약지구 보완공사 제안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 1 장 입찰자 유의사항

제 1 조 (발주 대상 및 인도조건)

1. 발주대상은 제안요청서 및 기타 관련서류에 의한다.
2. 인도조건은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가 지정하는 장소에 작업 완료 후 인수조건으로 한다.
3. 계약기간은 계약개시일로부터 80일 이내로 한다.
   (공사 기간 : '18. 8. 6 ~ 10. 25일 이내)
   단,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기간이 연장 될 경우, 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경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2 조 (입찰등록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2018년 7월 23일(월) 12:00 까지 당사 관리지원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당 소정양식)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3. 입찰참가자를 위임할 경우 위임장 또는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법인) 각 1통
   * 위임장 제출시 입찰참가 업체의 임.직원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 첨부
4. 등록증 사본 1통
5. 시공능력 순위 확인서 1통
6. 실적증명서, 면허수첩사본(도급순위 기재된 사본) 각 1통
7. 지명원(직원 자격증 보유 증빙서류 포함) 1부
8. 금융거래확인서 원본, 기업신용평가서 원본 각 1통
9. 입찰보증금 (세부사항 : 입찰자유의서 제3조 참조) 1통
10. 제안서 및 내역서 등 부속서류 일체(밀봉제출) 6통

(5,6항: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7항: 공고일 기준, 8항: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서류일 것)

※ 등록장소 :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 관리지원팀(☎ 02)551-0836 전현주 차장)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구 테헤란로87길22(삼성동,한국도심공항터미널) 616호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 제출시 반드시 원본대조를 필하여야 함

제 3 조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시 입찰금액의 10/100이상의 입찰금액을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또는 증권으로 납부한다.

1.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을 피보험자로하는 보증금액이상의 이행보증보험증권
2. 해당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제 4 조 (입찰보증금의 처리)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 체결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당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에 귀속시킨다.

제 5 조 (평가방법 및 낙찰자 결정)

1. 평가는 제출 서류와 제안서 및 제안발표를 통해 당사 기준에 의한 내부심사를 거쳐 종합 평가(최고점수 업체)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2.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외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3.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선정한 후 계약을 체결한다.

제 7 조 (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 또는 관계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자의 입찰
4. 소정의 등록절차를 필하지 아니한 자가 제출한 입찰
5. 그 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제 8 조 (투찰의 무효)

제안서 내 입찰금액이 입찰보증금의 10% 이상의 (입찰금이 보증하는)금액이 기재 된 제안서

제 9 조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고의로 공사 등을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물품의 품질,수량을 부정 납품한 자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거나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자
4.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5. 당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시키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자
6.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 기타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7. 고의로 허위 서류 제출 또는 무효입찰을 한 자
8.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
9.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제 10 조 (입찰사항의 변경 등)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는 필요한 경우 입찰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때에는 변경사항을 입찰 전에 입찰 참가자에게 통지한다.

제 2 장 계 약 일 반 사 항

제 11 조 (계약의 체결)

1. 우선순위협상자는 당사와 협상이 완료된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2.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 1항의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단,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의 부득이한 형편에 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12 조 (계약이행보증금)

1.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전까지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에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제3조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금을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13 조 (금액의 고정 및 물량 정산)

내역서상의 계약단가는 계약기간 중 고정한다.

제 14 조 (대금지급)

1.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의 20%를 선급금으로 현금지급 요청할 수 있다. (지급보증서, 사용계획서(공정표) 발주처 접수 후 10일 이내 지급)
2. 계약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당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선급금 및 유보금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금액에 대한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3. 공사 유보금은 총공사비의 10%로 하며, 유보금의 지급은 아래항목이 완료된 후 당사의 확인 후 15일 이내에 현금지급한다.
   ⑴ 해빙기 동파·취약 지구 점검 보고의 근간인 실 내·외부 온도차이에 대한 열화상 측정이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이 요청하는 기간(18년 12월 중)에 계약자는 열화상 측정을 실시 후 자료 제출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시 계약자는 유보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⑵ 만일, 열화상 측정에 의해 공사한 부분에 이상 발견시 공사 계약자는 즉시 수정 보완해야하며, 그에 따른 추가 열화상 측정을 실시 및 보고서를 제출하여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의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 받은 후 유보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5 조 (물량의 증감 및 규격 변동)

(1) 계약물량은 당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이

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은 내역서상의 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한다.

(2) 신규 규격 등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16 조 (지체상금)

(1) 계약자는 계약서의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기한 익일로부터 매 지체일 수마다 계약금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한다.

(2) 제 1항의 사유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또는 당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의 사정 등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하여 발생된 경우에는 당해 기간의 지체상금은 면제된다.

(3)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또는 기타 예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4)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 17 조 (하자보수보증 기간 및 금액)

(1) 하자보수보증기간 개시일은 계약목적물 인수도일로 하며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기간은 입찰참가업체의 제안한 하자보증기간으로 한다.

(2) 제 1항의 보증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즉시보완하여야 하며, 또한 당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로부터 하자보완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지체 없이 그 요구에 응한다.

(3) 하자보수보증금은 전체계약금액(부가세포함)의 5% 로 하며, 제 3조의 방법으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4) 계약자가 하자보수보증기간 중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로 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 하자보수보증금은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에 귀속된다.

제 18 조 (계약의 해지)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고의 절차 없이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기간 내 계약이행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자의 거소가 불명확하거나 계약이행을 소홀이 한때
3. 2회 이상 검사에 불합격 할 때
4.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의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제출서류 등 기타 협조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지연 시켰을 때
5.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자가 본 계약의 해약을 요구 하였을 때
6.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의 허가 없이 제 3자에게 하도급 시켰을 때
7. 기타 계약자가 본 계약사항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 3 장 기 타 사 항

제 19 조 (하도급 금지)

계약자는 계약의 전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단,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에서 인정한 전문공사 부분은 하도급을 시행할 수 있다.

제 20 조 (관계서류의 숙지)

입찰자는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가 정한 현장설명서, 입찰자유의서, 제안요청서 및 관련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이해하고 납득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과 관련된 문서 등의 해석에 있어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의 해석에 따른다.

제 21 조 (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내역서, 입찰자유의서, 기타계약에 관한 문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제 22 조 (입찰조건의 변경)

관련서류상의 규격 또는 물량 등이 표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거나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문서로 문의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낙찰자의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체의 사항은 본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가 지정 또는 요청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이에 따라 야기되는 추가비용 및 추가용역 등에 대하여는 일

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제 23 조 (복제 또는 타인에의 대여)

본 입찰과 관련된 제반서류는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의 승인 없이 복제 또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제 24 조 (준용규정)

본 유의서에 규정되지 않은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준용하고 관련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의한다

제 25 조 (조문의 제목 해석)

본 유의서의 각 조문의 제목은 독립하여 효력이 없다.

제 26 조 (입찰제한)

당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에서 시행한 공사 도급업체 중 공사를 완료하고 하자보수를 시행함에 있어 지연중인 업체(하자보수요청 내용증명 발송 또는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업체)이거나, 부도 등 당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에서 판단한 부적격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 27 조 (청렴계약 이행)

① 계약 양당사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접대나 금품 등 일체의 부적절한 공여를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풍토조성 및 공정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상호 노력한다.
② 계약 당사자가 이를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지는 물론 향후 입찰참가 제한 등 거래단절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